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3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1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10.(화)	담당부서	국내복귀기업지원팀
담당과장	우성훈 팀장(044-203-4068)	담 당 자	김예은 사무관(044-203-4069)

"개정 유턴법, 3월 11일 시행"

- **지원 대상 업종 확대,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**
- **세제감면 등 코로나19 수출 대책 후속 조치로 유턴기업 유치 본격화**

[개정 유턴법 시행]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지난해 말 개정된 「**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**(이하 유턴법)」을 2020**년 3월 11일**부터 **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 법은 20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·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.

□ 개정된 **유턴법** 및 **시행령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(**업종추가**) **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**이 기존 제조업에서 **지식서비스산업·정보통신업**까지 **확대**된다.

- **지식서비스산업·정보통신업**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,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**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** 증설로 인정되어 **유턴기업**에 **선정·지원**될 수 있다.

* 제조업은 공장 신·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·증설 판단

❷ (**국·공유지 사용특례**)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**국·공유재산 장기임대**(50년), **임대료 감면**, **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**도 **신설**된다.

- 이에, **유턴기업**은 국·공유재산 임대 시 **재산가액 1% 이상의 임대료**를 **적용**받고, **최대 50% 범위**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**감면**이 **가능**하다.

- 또한 매입한 국·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**납부기일**을 **연기**(최대 1년)하거나 **분할 납부**(최대 20년) 할 수 있다.

❸ (**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**) 한편,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, **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**를 **격상***하여 **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**을 **강화**할 예정이다.

* 위원장 : 통상교섭본부장 → 산업부 장관 / 위원 :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→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

❹ (**지원체계**) 마지막으로, **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**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**원스톱서비스**가 **가능해지고** 이를 통해 **유턴기업**의 **편의**를 **증진**한다.

<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>

구분	법률	시행령
업종확대	·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에 추가	· 지식서비스업·정보통신업 사업장 신·증설 판단 기준 신설
국·공유지 사용특례	·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신설	· 임대료 및 감면 기준 규정 신설 (임대료 재산가액 1% 이상, 최대 50% 감면 가능)
	·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규정 신설	· 매입 및 매각 기준 신설(대금 분할납부 가능, 최대 20년 등)
위원회	· 근거 규정 신설	· 위원장 및 위원 직위 변경 등
지원체계	· 원스톱지원 근거 신설	-

[코로나19 계기 유턴지원확대]

□ 한편,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**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**이 부각됨에 따라, **국내 공급망을 강화**하기 위해 **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***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.

* 코로나19 수출대책(총리주재,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.20)

<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>

○ 우선 **중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***하고(3월, 조특법 개정 예정),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**E-9 비자**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.

*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

○ 또한,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**'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'** 을 **우선 지원**하고 **지원 수준을 확대**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**'산업기술 R&D 사업'**에서도 **우대가점**을 부여한다(3월, 지침 개정 예정).

○ 아울러, 現 동반유턴* 개념을 **공급망 관점**으로 **확대**하고 **유턴기업**과 **국내 수요기업**을 **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** 및 **패키지 지원 강화**를 통해 **공급망 안정화**를 촉진할 계획이다.

* 現 동반유턴은 동종·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

< 패키지 지원 (예시) >

현 행		신설 추가지원 (예시)
‣ 지역투자보조금 ‣ 고용창출장려금 ‣ 구조조정컨설팅 등	+	‣ 고용보조금 (추가 지원) ‣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‣ 스마트공장·자동화설비 지원 ‣ 마케팅·인력양성·컨설팅 지원

□ 산업부는 **개정 유턴법 시행**과 **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**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,

○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**유턴데스크를** 기존 **12개에서 36개**로 **대폭 확대**하고

○ 담당관 지정 등 **지방지원단***과의 **연계**를 **강화**하여 **유치활동**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국내 광역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정착 업무 지원(KOTRA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김예은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유턴법령 개정사항 요약

□ **유턴법 개정사항 요약**

개정 구분	개정 내용
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(추가)	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→ 제조업, 정보통신업, 지식서비스산업
국·공유재산 사용특례 (신설)	국·공유지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(50년) 특례
	임대료 산정 및 감면 특례
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(신설)	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근거
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기능 (추가)	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기관 이송 등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기능 확대

□ **시행령 개정사항 요약**

개정 구분	개정 항목	개정 내용
제조업 외 국내복귀 판단기준	제조업 외 업종 국내사업장 신·증설 기준 (신설)	제조업-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 신·증설
		지식서비스·정보통신업 - 사업장 면적 또는 생산설비 증가
국·공유재산의 임대	적용대상지역, 임대료 산정 비율, 감면율 (신설)	대상지역 - 수도권 제외
		임대료 산정비율 - 재산가액 1% 이상
		감면율 - 최대 50%
국·공유재산의 매입	적용대상지역, 분할납부 방법 (신설)	대상지역 - 수도권 제외
		분할납부 방법 ❶ 국가 소유 토지 등 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가능, 20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 ❷ 지자체 소유 토지 등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

자금지원	국내복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대상 (추가)	'토지매입비용' → '토지·공장의 매입·임차비용'으로 확대
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	위원장 및 위원 직위 (변경),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신설)	❶ 위원장 : 통상교섭본부장 →산업부 장관 ❷ 위원 :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→ 차관 등 부기관장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사유 신설
시행계획	시행계획의 수립·통보 기한 (신설)	차년도 시행계획 수립·통보 산업부 → 관계 중앙행정기관 (매년 11월 30일)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 → 산업부 (추진 차년도 1월 31일)

□ 시행규칙 개정사항 요약 ※ 3.12. 관보 게재 예정

개정 항목	개정 내용
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(축소)	[축소 서류] 1) 해외사업장 시설 관련 서류 2)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3) 재무제표 제출대상연도 축소 등
유턴법 제13조의5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국·공유재산 매각 해지 유예 기간 (신설)	❶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: 50일 이내 ❷ 수의계약 후 계약서 상의 사업착수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: 1년 이내